

의안번호	제 2020 - 23호
보 고	2020. 9. 14.
연 월 일	(제104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목 차

I. 제135차 전체회의 ······	······1
1. 일시·장소 ······	1
2. 참석자	1
3. 주요 안건	1
II. 강도범죄/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	2
1. 강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2
2.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2
III.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5개 범죄의 범죄군 명칭	8
1. 경과 및 검토 배경	8
2. 검토 결과	12
IV. 대유형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형량범위, 양형인자 및	집행유
예 기준	14
1. 개관	14
2. 권고 형량범위	15
3. 양형인자	28
4. 집행유예 기준	····· 45
V. 대유형 2.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형량범위, 양형인자 및 집학	행유예
기준	····· 4 8
1. 개관	48
2. 권고 형량범위	
3. 양형인자	
4. 집행유예 기준	

VI. 대유형 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의 형량범위, 양형인자 및 집행
유예 기준69
1. 개관69
2. 권고 형량범위70
3. 양형인자74
4. 집행유예 기준78
VII. 대유형 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의 형량범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79
1. 개관79
2. 권고 형량범위80
3. 양형인자
4. 집행유예 기준87
VIII. 대유형 5.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의 형량범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89
1. 개관
2. 권고 형량범위89
3. 양형인자92
4. 집행유예 기준95
5. 집행유예 참작사유표의 제시 방안96
IX. 향후 일정 ······97

【별첨】

- 백광균, "디지털 성범죄 형량 범위 및 양형인자 등"
- 김춘수·유관모, "디지털 성범죄군 양형기준 검토-형량 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 백광균, "마약, 강도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관계기관 의견 검토"
- 김춘수·유관모, "강도범죄·마약범죄 양형기준 의견조회 결과 검토"

I. 제135차 전체회의

1. 일시ㆍ장소

○ 일시 : 2020. 8. 31.(월) 15:30 ~ 20:30

○ 장소 : 화상 회의 및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전문위원 13명)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김춘수, 김혜경, 김희연, 박성훈, 백광균, 범현, 유관모, 이형일, 최승원, 최준혁, 한상규 전문위원(이상 가나다 순)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강도범죄」/「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조회 결과 검토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5개 범죄1)를 하나의 범죄군으로 통합한 양형기준의 범죄군 명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5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II. 강도범죄/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

1. 강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회신 내용 없음
- 양형위원회가 의결한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수정 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데 전문위원단 의견 일치

2.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가. 유형 분류 관련

(1) 회신 요지

양형기준 수정안은 유형의 정의에서 마약 범죄의 제4유형(대량범) 중 제2, 3유형의 적용법조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4, 6, 7호를 제외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그런데 특정범죄가 중법 제11조 제1항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4, 6, 7호 범죄의 모든 행위태양을 대상으로 그 취급금액이 큰 경우를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입제조 등 특정 행위태양에 대해서만 가중처벌하는 취지이고, 매매 등의 행위태양인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매매 등을 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4, 6, 7호의 범죄가 성립할 뿐이므로, 마약범죄의 제4유형(대량범) 중 제2, 3유형의 적용법조에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뿐만 아니라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4, 6, 7호의 범죄가 있음 (대한변호사협회)

(2) 관련 법률

○ <u>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u>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것)

¹⁾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규정된 범죄(다만, 미수범 처벌규정인 제6항 제외), ②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 ③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에 규정된 범죄), ④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규정된 범죄), ⑤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마약류관리법 제58조(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된 것)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야우 스츠인 제공 제품 제품 제 제품 안성한 기 또는 그리한 문제으로 스
-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 지·소유한 자
-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 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 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 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조

제 · 투약 · 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논의 결과 ➡ 의견 불일치

① 다수 의견(11인) : 수정안 유지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에서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 항에 규정된 행위태양 중 '수출입·제조, 수출입 등 목적의 소지·소유 등'에 대해서만 마약류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 하고, '매매, 수수, 제공 등'의 행위태양을 가중처벌의 대상 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른 것

헌법재판소 2003. 11. 27.자 2002헌바24 전원재판부 결정

마약류관리법에서 단순범과 영리범을 구별하는 취지는 오히려 단순매수와 영리매수는 적질에 있어서 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 하겠다. 실무상으로도 마약사범에 대하여 영리범과 단순범을 구별하고 있는 마약류관리법의 법조를 올바르게 적용하고 그 죄질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벌을 과하기 위해서는 수사 및 재판과정을 통하여마약 거래의 유형이 마땅히 규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거래되는 마약의 양 등의 정황으로 미루어 비영리매수인지 역부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구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매수를 영리매수와 같은 법정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이 적용되는 범죄의 법정형과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이 적용되는 비영리목적의 매매 등의 법정형에는 차이가 있음(전자가 후자보다 법정형이 더 무거움). 따라서 권고 형량범위에도 차등을 두어야 하고, 같 은 소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 ①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무기정역 또는 7년 이상의 정역', ②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정역 또는 10년 이상의 정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행위태양이 매매, 수수, 제공 등에 해당하더라도, 영리 목적 이 있거나 상습범인 경우에는 대량범에 적용되는 대유형4보 다 높거나 유사한 형량범위가 권고되므로 처벌의 공백 없음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의 법정형 :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
- 마약범죄 양형기준 중 대유형 2(매매·알선 등) 소유형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의 권고 형량범위 : 감경 영역은 5 년-9년, 기본 영역은 7년-11년, 가중 영역은 9년-14년

② 소수 의견(2인) : 회신 의견 반영하여 수정안 재수정

- 마약·향정 가.목 등의 매매 등이 향정 나.목 등의 매매 등보다 더 가볍게 처벌되는 불균형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보와 필요
-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에서 수출입·제조·소지·소 유 등 행위태양에 더하여 매매 등 행위태양을 추가하는 것 이 타당한 입법 방향이므로, 양형기준에서 이를 구현할 필요 가 있음
- 따라서 대량범의 유형 정의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 1항 제1호' 부분을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제1호(매 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 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의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로 변경함이 타당

나. 형량 범위 관련

(1) 향정 라.목의 때때·알선 등 형량 범위를 상향할 것인지 여부 (가) 회신 요지

마약 범죄는 「투약・단순 소지 등(투약 등)」보다는 「매매・알선 등(매매 등)」을 더 강력히 처벌하는 경향이고 법률에도 그런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정안에서는 환각물질과 향정 라.목의 투약 등의 기본영역보다 매매 등의 기본영역이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가볍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매매 등의 형량 범위를 상향할 필요 있음 (마약퇴치운동본부)

(나) 논의 결과 ⇨ 수정안 변경(의견 일치)

○ 수정안은 현행 양형기준과 마찬가지로 대유형 1(투약・단순 소지 등)에서와는 달리 대유형 2(매매・알선 등)에서 환각물 질과 향정 라.목을 같은 소유형으로 분류함. 그 결과 환각물 질은 대유형1보다 대유형2의 권고 형량범위가 높으나, 향정 라.목의 경우 대유형 1보다 보다 대유형 2의 권고 형량범위 가 다소 낮거나 같아지게 됨

[대유형 1. 투약ㆍ단순소지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6월 - 10월	8월 - 1년6월	10월 - 2년

[대유형 2. 매매·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8월	6월 - 1년4월	10월 - 2년

○ 동일한 마약류인 경우 투약·단순소지 등보다 매매·알선 등의 사회적 해악성이 커서 더 무겁게 처벌함이 타당하므로, 대유형 2(매매·알선 등) 중 소유형 1(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의 형량 범위를 아래와 같이 상향함이 타당

대유형 2. 매매 · 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6월 - 1년	8월 - 1년 8월	10월 - 2년 6월

(2) 전반적으로 형량 범위를 상향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가) 회신 요지

현행 양형기준은 형량 범위가 지나치게 낮아 마약 범죄에 대한 억제 효과가 높지 않고, 특히 법정형과 비교할 때 법정형 대비 형량이 매우 낮아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법정형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입법자의 입법 의도와도 맞지 않는 상황이므로,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함 **(법무부)**

마약 범죄의 제4유형(대량범)에서 기본, 가중영역의 하한 상향도 고려해볼 수 있음 (서울북부지법)

(나) 논의 결과 □ 수정안 유지(의견 일치)

○ 양형위원회에서는 법정형의 변경 여부, 양형기준 준수율 등 여러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행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유지하거나 일부 변경하기로 의결함. 이를 번복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음

Ⅲ.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5개 범죄의 범죄군 명칭

1. 경과 및 검토 배경

○ 전문위원단에서는 제127차 전체회의를 통하여 당시 설정 대상이었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의 범죄군 명칭에 관하여 검토하였고, 2019. 10. 25. 열린 양형위원회 제97차 정기회의에서 전문위원단의 검토 결과가 보고됨. 당시 보고된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디지털 성범죄」라는 명칭의 적정성 여부

- ① 다수 의견(10인): 적절하지 않음
- 설정 대상 범죄의 범위, 디지털 기기가 아닌 범행 수단의 존재 가능성. 디지털 성범죄 개념 정립에 혼동을 줄 우려 등 고려
- ② 소수 의견(1인): 적절함
- 디지털 성범죄 개념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 대부분 범행 수단이 디지털 기기인 점 등 고려
- 2. 제1 쟁점에 관한 다수 의견이 제안한 범죄군 명칭
- ① 다수 의견(8인): 「카메라·통신매체 등 이용 성범죄」
- 카메라와 통신매체라는 대표적 행위 매개 수단을 열거하고 상위 포섭 범죄(성범죄)를 언급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② 소수 의견(2인): 「카메라 등 매체 이용 성범죄」
- 향후 다른 범죄수단을 이용한 범죄의 포섭 가능성 고려
- 제97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는 범죄군 명칭으로서 「디지털 성범 죄」가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음. 그러나 「성 범죄」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전문위원단에 추가 검 토 요청

○ 전문위원단의 추가 검토 결과는 2019. 12. 9. 열린 제98차 양형위 원회 회의에서 보고됨. 당시 보고된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다수 의견(9인) : 「성범죄」명칭 사용이 적절함

-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와 제14조에 규정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성범죄」에 포섭하여 「성폭력범죄」와 구별하고 있음. 그럼에도 양형기준에서 「성폭력범죄」로 분류할 경우 개념상 혼동이 생길 수 있음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나 신체적 접촉을 수반하지 않고, 그 행위태양이 통상적인 폭력 개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성폭력'이라는 명칭이 부적절
- 향후 동종 또는 유사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추가 설정 가능성을 감안할 때. 외연이 더 넓은 '성범죄'라는 표현이 적합

2. 소수 의견(3인): 「성폭력범죄」명칭 사용이 적절함

- 최근 디지털 기술이나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문제되고 있는 촬영 이나 유포, 판매목적의 유통·판매 등에 있어서 디지털 범죄가 갖고 있는 폭력적 성격이 잘 드러나도록 범죄군의 명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디지털 혹은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를 폭력 범죄로 정의하는 것이 디지털 성범죄의 폭력성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더 감수성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음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에 규 정되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법률에 배치되는 것은 아님
- 한편, 제98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개정 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의결. 나아가 제100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3개 범죄2)를 하나의 범죄군으로 묶어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의결

○ 이에 따라 전문위원단에서는 제133차 전체회의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3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범죄군 명칭에 관하여 검토하였고, 2020. 4. 20. 열린 양형위원회 제101차 정기회의에서 전문위원단의 검토 결과가 보고됨. 당시 보고된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양형위원회 심의 결과와 같이 「디지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범죄군 명칭

- ① 다수 의견(9인): 「아동·청소년음란물·신체촬영·통신매체음 란범죄」
- 범죄별 주된 속성을 일목요연하게 집약, 연결하여, 양형기준을 참조할 국민과 법관이 어느 범죄가 이 범죄군에 해당하는지를 범죄군 명칭만 보고도 쉽게 알 수 있음
- ② 제1 소수 의견(1인): 「아동·청소년·통신매체·카메라 등 이용 성범죄」
- 다수 의견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면서 '성범죄'의 특성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음
- ③ 제2 소수 의견(1인) : 「불법촬영 등 범죄」
- 이 범죄군의 대표적인 속성은 '불법촬영'에 있으므로, '불법 촬영'을 범죄군 명칭에 전면적으로 드러냄이 타당
- 2. 범죄군 명칭에「디지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
- ① 다수 의견(8인): 찬성
- 국민적 관심이 높은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설정 하였다는 상징성이 있고, 향후 '디지털'을 이용하는 정보통신

²⁾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망 범죄 등을 포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장성이 있음

② 소수 의견(3인) : 반대

- 디지털 기기가 아닌 범행수단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포섭할 수 있는 명칭에 해당하지 않고, 자칫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한 범죄는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음
- '디지털 성범죄'는 법률용어가 아닐 뿐 아니라 아직 그 개념 자체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 의 범죄군 명칭으로 공식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3. 「디지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의 범죄군 명칭

※ 디지털이라는 용어 사용에 반대하는 전문위원은 따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음

① 다수 의견(6인) : 디지털 성범죄

-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감 안할 때, 「성범죄」라는 명칭이 적합함

② 소수 의견(2인) : 디지털 성폭력범죄

- 비록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실질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성폭력범죄」라는 명칭이 적합함
- 제103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규정하는 신설 범죄인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와 같은 법 제14조의3이 규정하는 신설 범죄인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를 모두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에 추가하기로 의결하였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5개 범죄를 하나의 범죄군으로 묶어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의결
- 전문위원단에서는 이와 같은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와 범죄군

구성 방안에 대한 양형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를 토대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등 5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범죄군 명칭을 검 토함

2. 검토 결과 ⇨ 의견 불일치

가, 다수 의견(9인): '디지털 성범죄'

- 비록 '디지털 성범죄'가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이미 다른 국가기 관과 언론, 학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개념 혼란의 여 지가 크지 않음
- '보건', '게임물' 등과 같이 종전에도 비법률용어를 범죄군 명칭 에서 사용한 사례가 존재함
- 국민적 관심이 높은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 였다는 상징성이 있고, 향후 '디지털'을 이용하는 정보통신망 범죄 등을 포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장성이 있음
- 범행 수단으로 대부분 디지털 방식이 사용되고 있고, 디지털 방식의 사용으로 인한 반복 재생, 광범위한 배포 등이 주된 사회적 문제가 된 점을 범죄군 명칭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5개 범죄의 개별 특성을 추출하여 범 죄군 명칭에 나열하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고, '디지털 성범 죄' 이외에 마땅한 대안을 찾기 어려움

나. 소수 의견(4인)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범죄' 또는 '성착취물·매체이용 등 범죄'

○ '디지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① 아날로그 방식으로

행해지는 출력물 이용 등 범죄나 ② 사이버 공간 이외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배포행위가 제외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음

- 현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와 같이 디지털 성범 죄의 개념에 자연스럽게 들어맞을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범죄 유형까지 범죄군에 포함됨.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라 는 용어를 사용하면 해당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위를 직관적 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향후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 정립에도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
- '보건'이나 '게임물'은 법률명 또는 법률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률용어로 볼 수 있으나, '디지털 성범죄'는 현재까지도 비법률용어임. 재판 과정을 통하여 적용되고, 판결 이유에서도 언급될 수밖에 없는 양형기준의 범죄군 명칭으로 비법률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양형위원회에서 5개 범죄를 하나의 범죄군으로 묶어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의결한 이상 종전에 보고되었던 범죄유형별 특징적인 행위태양을 추출하여 범죄군 명칭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게 되었음. 따라서 대안으로 ① 대표범죄를 전면에 내세우는 형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범죄' 또는 ② 대유형별 공통 요소를 최대한 압축한 '성착취물·매체이용 등 범죄'가 범죄군 명칭으로 적절함

IV. 대유형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형량범위, 양형 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1. 개관

가. 법률 규정 및 설정 범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u>제작·수입 또는 수출</u>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u>배포·제공</u>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u>광고·소개</u>하거나 <u>공연히 전시 또는</u>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④ <u>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u>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u>구입</u>하거나 <u>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u>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적용	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	무기징역, 5년↑ 징역
	2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 / 소지, 운반, 광고, 소개 / 공연히 전시, 상영	5년↑ 징역
§ 11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제공 / 광고, 소개 / 공연히 전시, 상영	3년↑ 징역
811	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정황 알면서 알선	3년↑ 징역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 소지, 시청	1년↑ 징역
	7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 제작, 수입, 수출	제1항의 1/2 가중

나, 의결된 유형 분류 방식

○ 제103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소유형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기로 의결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제작 등			
2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3	배포 등			
4	아동ㆍ청소년 알선			
5	구입 등			

2. 권고 형량범위

■ 고려 사항

○ 일반적 사항

- 양형기준은 전형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종전 양형실무의 70~80%를 반영하여 형량 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양형에 대한 일반 국민의 건전한 인식을 반영하기 위하여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가할 수 있음

○ 해당 범죄군의 특수한 사항

-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고, 그 양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비판이 높아지고 있음
- 소유형 2(영리 등 목적 판매 등), 소유형 3(배포 등), 소유형 5(구입 등)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크게 상향되었음
- 상습 제작 범죄에 대해서 형의 1/2을 가중하는 조항 신설됨

■ 양형위원회 심의 결과

○ 2020. 4. 20. 제101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청소년성보호 법이 개정되기 전에 전문위원단이 마련한 권고 형량범위(안)에 대한 심의를 마침. 그중 법정형의 변경이 없는 소유형 1(제작 등)의 권고 형량범위에 관한 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제작 등	2년6월 - 6년	5년 - 9년	7년 - 13년

가, 소유형 1(제작 등)

(1) 법정형 동일 성범죄군 형량 범위

(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 4, 5항(무기 / 5년 ↑)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청소년 강간·준강간 청소년 위계·위력 간음	3년~5년6월	5년~8년	6년~9년

(나)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 3항(무기 / 5년 ↑)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3년~5년6월	5년~8년	6년~9년

(2) 선고 형량

(가) 양형자료 조사결과 (2014. 1. 1.~2018. 12. 31. 선고 단일범)

전체		선고내역		전체
선세		실형	집행유예	신세
청소년성보호법	인원	3	12	15
제11조 제1항	%	20.0	80.0	100.0

실형		형량(월)				전체
20		5	6	30	36	교세
청소년 성보호법	인원	-	-	3		3
제11조 제1항	%	-	-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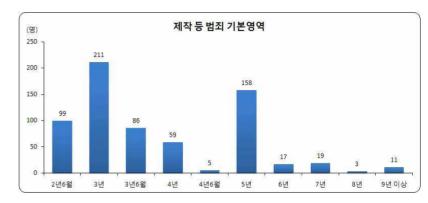
집행유예			형량(월)						전체	
		1	4	6	8	10	12	30	36	건세
청소년성보호	인원	-	-	-	-	-	-	10	2	12
법 제11조 제1항	%	-	-	-	-	-	-	83.3	16.7	100.0

(나) 분석

- 평균형량 = 30.4월
- 법정형 하한 징역 5년 → 작량감경한 징역 2년6월(30월)에 집중
- 처벌불원,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상당 부분 고려함. 이에 비추어 볼 때 대상 범죄의 양형분포만으로는 기본 영역이나 가중 영역의 형량 범위까지 가늠하기는 어려움

(3) 법관 대상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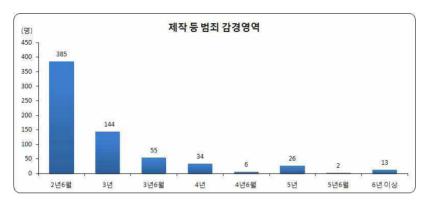
(가) 기본 영역



(나) 가중 영역



(다) 감경 영역



(라) 분석

감경 영역	인원	%
2년6월	385	57.9
3년	144	21.7
3년6월	55	8.3
4년	34	5.1
4년6월	6	0.9
5년	26	3.9
5년6월	2	0.3
6년 이상	13	2.0
전체	665	100

기본 영역	인원	%
2년6월	99	14.8
3년	211	31.6
3년6월	86	12.9
4년	59	8.8
4년6월	5	0.7
5년	158	23.7
CIE		
6년	17	2.5
6년 7년	17 19	2.5
7년	19	2.8

가중 영역	인원	%
4년 이하	94	14.1
5년	252	37.9
6년	75	11.3
7년	132	19.8
8년	60	9.0
9년	20	3.0
10년 이상	32	4.8
전체	665	100

(4) 논의 결과 ○ 기존 심의 결과 유지 / 상습범의 경우 형량 범위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하는 서술식 기준 추가(의견 일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제작 등	2년6월 - 6년	5년 - 9년	7년 - 13년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1유형)
- 제101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때와 비교하여 구성요건, 법정형 의 변동이 없으므로, 당시 심의 결과를 그대로 유지함이 타당
- 법률 개정으로 추가된 상습 제작 등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 조 제7항)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는 서술식 기준을 두는 방식으로 가중된 형량범위를 권고함이 타당
-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도록 한 법률 규정의 취지를 반영
- '상습'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영역 이동 방식을 취할 경우 서술식 기준과 비교하여 가중의 효과가 떨어져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없음

나. 소유형 2(영리 등 목적 판매 등)

- (1) 법정형 동일 성범죄, 성매매범죄 형량 범위
- (가)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2, 5항(5년↑)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유사강간 / 위계·위력유사성교	2년6월-5년	4년-7년	6년-9년

(나)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4호(5년 ↑)

- 성매매범죄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

요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2년6월-5년	3년6월-7년	5년-8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2년6월-5년	3년6월-7년	5년-8년

(2) 선고 형량과 법관 대상 설문조사

○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어(10년 이하 징역 → 5년 이상 징역),
 기존 선고 형량에 대한 운영지원단의 양형자료 조사결과나 기존 법정형을 전제로 하여 법관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의미가 없게 됨

(3) 논의 결과

(가) 요약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다수 의견(8인)	2년6월 - 5년	4년 - 8년	6년 - 10년
제1 소수 의견(3인)	2년6월 - 6년	5년 - 9년	7년 - 13년
제2 소수 의견(2인)	2년6월 - 6년	5년 - 9년	6년 - 10년

(나) 논거

⑦ 다수 의견(8인)

- 소유형 1(제작 등)과 비교하여 무기징역이 법정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법률 개정 전까지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소유형1(제작 등)보다 죄책의 정도가 다소 낮다고 평가할 수 있음. 따라서 소유형 1(제작 등)의 권고 형량범위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권고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대폭 상승되었고, 아직 변경된 법 정형에 따른 양형실무가 형성되지 않은 만큼 양형기준 설 정 단계에서는 규범적 조정에 신중을 기하고, 양형실무의 추이를 분석하여 추후 적절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 따라 서 법정형이 동일한 종전 성범죄/성매매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를 최대한 수용하면서 구성요건적 행위가 다양하다는 점, 엄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상한을 다소 높이는 범위에서 규범적 조정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수 의견에 의하더라도, 법정형이 동일한 성범죄/성매매범 죄의 권고 형량범위보다 더 높아 엄벌의 필요성에 관한 사 회적 요구를 충족함

④ 제1 소수 의견(3인)

-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범죄의 불법성은 제작 등 범죄의 불법성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소유형 1(제작 등)과 동일하게 권고 형량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함
- 무기징역을 선택할 경우 유기징역에 관한 권고 형량범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포함되었는지 여 부는 권고 형량범위의 설정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에 해당 하지 않음

④ 제2 소수 의견(2인)

- 무기징역은 죄책이 아주 무거울 때 선택되므로, 무기징역이 법정형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양형기준의 가중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감경 영역과 기본 영역은 소유형 1(제작 등) 범죄와 동일하게 정하고, 무기징역의 법정형 포함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중 영역만 다수 의견처럼 소유형 1(제작 등) 범죄보다 형량 범위를 다소 낮추는 것이 타당함

다. 소유형 3(배포 등)

(1) 법정형 동일 또는 유사 성범죄군 형량 범위

(가) 형법 제297조(3년↑)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간	1년6월-3년	2년6월-5년	4년-7년

(나)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 4항(3년↑ / 3-5천만 원)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의제간음/강제추행	1년6월-3년	2년6월-5년	4년-6년

(2) 선고 형량과 법관 대상 설문조사

○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어(7년 이하 징역 → 3년 이상 징역), 기존 선고 형량에 대한 운영지원단의 양형자료 조사결과나 기존 법정형을 전제로 하여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의미가 없게 됨

(3) 논의 결과 및 형량 범위안

(가) 요약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다수 의견(7인)	1년6월 - 4년	2년6월 - 6년	4년 - 8년
제1 소수 의견(4인)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제2 소수 의견(2인)	1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나) 논거

⑦ 다수 의견(7인)

-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었고, 아직 변경된 법 정형에 따른 양형실무가 형성되지 않음. 따라서 법정형이 동일한 종전 성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최대한 수용하면서, 구성요건적 행위가 다양하고, 엄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상한을 다소 높이는 범위 에서 규범적 조정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수 의견에 의하더라도, 법정형이 동일한 성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보다 더 높아 엄벌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 를 충족함

④ 제1 소수 의견(4인)

- 법정형이 동일한 성범죄인 형법 제297조에 규정된 강간죄 와 비교하여 소유형 3(배포 등) 범죄의 죄책이 더 무겁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따라서 형법 제297조에 규정된 강간죄의 권고 형량범위와 동일하게 권고 형량범위를 정하는 것이 합 리적임

④ 제2 소수 의견(2인)

- 다수 의견처럼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범죄의 양형 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를 참고하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심각성,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와 의제간음/강제 추행의 성질상 차이 및 다른 소유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함이 타당함
- 기본 영역의 하한은 법정형의 하한과 일치하도록 징역 3년 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소유형 4(아동·청소년 알선)

(1) 법정형 동일 또는 유사 성범죄군 형량 범위

(가) 형법 제297조(3년↑)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간	1년6월-3년	2년6월-5년	4년-7년

(나)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 4항(3년↑ / 3-5천만 원)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의제간음/강제추행	1년6월-3년	2년6월-5년	4년-6년

(2) 선고 형량과 법관 대상 설문조사

○ 양형자료 조사 시 단일범으로 선고된 사안이 발견되지 않았고, 원래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법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존재하지 않음

(3) 논의 결과 및 형량 범위안

○ 법정형이 같은 소유형 3(배포 등)의 권고 형량범위에 관한 논 의 결과와 동일함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다수 의견(7인)	1년6월 - 4년	2년6월 - 6년	4년 - 8년
제1 소수 의견(4인)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제2 소수 의견(2인)	1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마. 소유형 5(구입 등)

(1) 법정형 유사 성범죄: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6항(1년↑ / 1-3천만 원)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위계·위력 추행	9월-1년6월	1년3월-2년6월	2년-3년

* 서술식 기준에 따라 소유형2 의제간음/강제추행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한 것임

(2) 선고 형량과 법관 대상 설문조사

□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어(1년 이하 징역 → 1년 이상 징역), 기존 선고 형량에 대한 운영지원단의 양형자료 조사결과나 기존 법정형을 전제로 하여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의미가 없게 됨

(3) 논의 결과 □ 의견 일치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전문위원 의견 일치	6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6월 - 3년

- 법률 개정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에 구입, 시청이 추가되었고, 구입 경로·성착취물의 불법성 정도 등이 천차만별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형량 범위를 다소 넓게 정하여 개별 사건의 특수 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애인에 대한 위계·위력 추행의 권고 형량범위를 참고하되, 죄책의 정도를 감안하여 다소 하향하는 방향으로 권고 형량범 위를 설정함이 타당

바, 요약(전문위원단의 일치된 의견 또는 다수 의견에 의할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제작 등	2년6월 - 6년	5년 - 9년	7년 - 13년
2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2년6월 - 5년	4년 - 8년	6년 - 10년
3	배포 등	1년6월 - 4년	2년6월 - 6년	4년 - 8년
4	아동·청소년 알선	1년6월 - 4년	2년6월 - 6년	4년 - 8년
5	구입 등	6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6월 - 3년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1유형)

3. 양형인자

가. 양형위원회 심의 결과

○ 2020. 4. 20. 제101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문위원단이 마련한 양형인자(안)에 관하여 심의를 진행하였고, 심의가 마쳐 진 일부 양형인자는 아래와 같음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빠 별 양 평 인 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가 있는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 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 적인 조치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 사자의 범행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행위	• 소극 가담	
8	행위자 /기타	• 처벌불원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이상 전과(성범죄 포함,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3)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 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3) 밑줄이 그어진 범죄의 경우 제101차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로 추가한 것으로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일단 해당 범죄 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작성함.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양형인자의 정의]

(1)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 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제작, 수입된 성착취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 한 경우
- 유포된 성착취물을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 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 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유포 한 경우
-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이익 제공으로 유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5)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의 인적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성착취물을 ① 제작, 수입, 수출하거나, ② 불특정 다수 또는 피해자의 가족, 같은 교육시설의 교사·학생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 사

람에게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③ 판매·대여·배포 ·제공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④ 공연히 전시, 상영하거나, ⑤ 구입·소지·시청한 경우4)

- 자살, 자살시도, 가정파탄, 학업 중단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5)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6)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 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 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⁴⁾ 기존 양형위원회 심의 내용을 구성요건 변동에 맞추어 수정함

⁵⁾ 기존 양형위원회 심의 내용을 무거운 피해부터 나열하고, 아동·첫소년 특수성에 맞게 실직은 제외

(7)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 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 또는 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대상인 아동·청소년인 장애 인을 또는 위 아동·청소년인 장애인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8)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 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 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9) 인적 신뢰관계 이용

- 구성요건적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인 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상호 신뢰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 한다.
- 사제(師弟)
- 지인의 자녀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10)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범행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할 의사를 표명하여 압력을 가하 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를 의미 한다.

나. 검토 결과

- 전문위원단은 2020. 4. 20. 제101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양형인자에 대한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함
- 양형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양형인자 중 전문위원단 사이에서 새로운 검토 결과가 제시되지 않은 양형인자의 경우 양형위원 회의 심의 결과를 그대로 따름

(1) 요약

- ※ 굵은 글씨와 밑줄로 표시된 부분은 의견 불일치
- ※ 이탤릭체(기운 글씨) 표시된 부분은 기존 양형위원회 심의 결과와 다른 의견이 제시된 부분

_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가 실존하지 않는 경우 (4유형 제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 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또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 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 적인 조치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동종 누범(성범죄, 성메메범죄 포함)
일	행위	 소극 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 유형)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 형)
반 양 형 인 자	행위자 /기타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정의 규정 유무에 의견 대립)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 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2) 의견이 일치된 양형인자

(가)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가 실존하지 않는 경우

- 실제 아동·청소년이 성착취물 제작 등에 이용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실존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죄책이 상대적으로 가벼움
- 피해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처벌불원'이라는 양 형인자로 감경될 여지가 없는 만큼 '피해자가 실존하지 않 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여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재판관 4명이 위헌 의견을 제시할 정 도로 위헌 논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야 함

○ 다만 아동·청소년을 알선하는 행위의 경우 당연히 피해자가 실존하므로 양형인자의 적용 대상에서 4유형은 제외

[정의 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인 경우를 의미한다.

(나)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 제101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는 특별가중인자로 동종 누범을 반영하기로 하면서 동종의 개념을 확장하여 성범죄도 포함시키기로 의결함
- 성범죄뿐 아니라 성매매범죄 역시 ① 왜곡된 성 의식의 발로이자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고, ② 특히 양형기준 설정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아동·청소년 알선 범죄와의 유사성이 인정됨. 따라서 성매매범죄도 동종 범죄에 포함시켜 동종 누범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 타당함

(다)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 범행 후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피고인과 그렇지 않은 피고인을 양형상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 음. 따라서 '진지한 반성'을 형의 감경 요소로 고려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음
- 성범죄를 포함하여 기존에 설정된 모든 범죄군의 양형기준 에서도 '진지한 반성'은 일반감경인자로 반영됨
- '진지한 반성'이라는 양형인자가 실무에서 지나치게 쉽게 인

정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나, 이는 '진지한 반성'이라는 양 형인자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충실한 양형심리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임

- (라) 일반가중인자: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동종 누범'과 같은 이유로 성범죄뿐 아니라 성매매범죄도 동종의 범죄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 (3)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양형인자
- (가) 특별가중인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v.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u>다수 의견(8인)</u>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 신적 장애상태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청소년성보호법은 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에 이용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 즉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특별히 무겁게 처벌하고 있음. 그럼에도 다른 범죄군의 양형기준에서 사용되고 있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특별 가중인자로 그대로 사용할 경우 '연령'과 관련하여 양형인자의 이중평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7조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범죄를 가중 처벌하고 있고, 형법 제305조 제1항에서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피고인의

나이와 관계없이 성년의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함. 또 성범죄의 양형기준 역시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경우의 권고 형량범위를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게 설정함. 따라서 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와 13세 이상인 경우를 구분하여 양형상 차등을 두는 것은 그 합리 성이 인정됨

-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에서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한 선례가 존재함. 다만 아래와 같은 정의 규정을 두어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함(☞ 2020 양형기준 책자 7쪽 상단 참조)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u>소수 의견(5인)</u>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다른 대유형인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 모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는 특별가중인자를 두고 있 고, 그 정의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로 정하고 있음. 굳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하여 다른 내용 의 양형인자를 반영할 필요가 없음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전부에 대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는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중 평가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음
-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피해자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

기보다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함이 타당

(나) 일반감경인자 또는 일반가중인자

- ① 일반감경인자로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 일반가 중인자로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 <u>다수 의견(9인)</u> : <u>일반감경인자로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u> 우(2유형)'만 반영
- 양형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물론이고, 조세, 성매매, 사행성·게임물범죄, 석유사업법위반등 대부분의 영리범죄에서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함
- 양형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대유형2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서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지 않고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만을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한 것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체제상 바람직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서만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할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함
- 이득액이 다액일 수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 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 우'가 이미 특별가중인자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영리 목적 범죄에 한하여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를 일반감경인자 로 반영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
- 영리목적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이익의 취득 여부 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법정형이 가중되고, 이에 따

라 권고 형량범위도 더 높게 설정되는데, 실제 이익액이 많다는 이유로 다시 가중을 하게 되면 이중 평가금지원칙에반할 여지가 있음

○ <u>소수 의견(4인)</u> : 일반가중인자로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 우(2유형)'만 반영

- 이득액이 경미하다는 사정과 다액이라는 사정 모두를 양형 인자에 반영함은 부적절하고, 둘 중 하나만 반영함이 상당
- 일반양형인자 중 행위인자의 경우 가중요소가 적은 점을 고려하여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만을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함이 타당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취득한 이익이 다액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가중인 자로 반영함이 타당

②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피고인과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 인 사이에 양형상 차등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형 사처벌 전력 없음'을 일반감경인자로 두는 데에는 전문위원 단의 의견이 일치함
- 다만 아래와 같은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일정한 경우를 '형사처벌 전력 없음'의 적용 대상 에서 제외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안되었고, 이에 대하여 찬 /반 의견이 나뉘었음

[정의 규정]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다수 의견(8인) : 정의 규정을 신설하지 않음이 타당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이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
-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현재 설정된 대부분의 양형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양형인자로서 다른 범죄군의 양형기준과 달리 그 적용범위에 일정한 제한을 둘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함

○ 소수 의견(5인) : 정의 규정을 둠이 타당

-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범죄의 특성상 암수 범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다수 범행으로 기소되어 일괄 처벌할 경우 단지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음
-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장기간 반복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한 범행과 같이, 비록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와 양형상 차등을 두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은 사례가 존재함

③ 일반가중인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u>다수 의견(11인)</u> : <u>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함이 타당</u>

- 특별가중인자인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

행'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불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이 낮으 므로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 성법죄 양형기준에서도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함

○ 소수 의견(2인)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이 타당

- 청소년성보호법의 보호 대상이자 판단능력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은 신고의무자 등의 범행에 못지않게 비 난가능성이 크므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야 함

(4) '합의' 관련 양형 요소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

(가) 검토 배경

- 양형위원회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 등이 개정되기 전에 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경우 '처벌불원'만을 일반 감경인자로 반영하고, ②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범죄의 경우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상당금액 공탁'을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기로 의결함
- 한편, 양형위원회는 원래 모든 범죄군에 걸쳐서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심의·정비할 예정이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이 하반기 과제로 추가되면서, 합의 관련 양형요소에 관한 심의 범위를 축소하여 하반기에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쟁점을 심의하기로 함
- 이에 따라 전문위원단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5개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과 관련된 범위에서 합의 관련 양형요 소를 추가 검토함

- 현행 양형기준상 합의 관련 양형요소의 현황과 외국의 합의 관련 양형요소의 현황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 내용은, 백광균, "디지털 성범죄 형량 범위 및 양형인자 등" 중 별지참조

(나) 범죄군 내 통일 여부

- ① 다수 의견(11인) : <u>대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합의' 관련 양형</u> 요소의 포함 여부와 위상을 결정
- 양형위원회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등 5개 범죄를 하나의 범죄군으로 묶어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하였으나, 보호법익 등에서 5개 범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반 영하여 '합의' 관련 양형요소의 포함 범위와 위상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 타당함
- 제1기 양형위원회에서도 양형기준의 설정 방식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개별 범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망라적 양형기준'이 아닌 '개별적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의결함
-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등에서는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는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판단능력이 아직 은 성숙하지 않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등과 동일하게 취 급할 수 없음
- 소수 의견(2인) :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통일적으로 규정

- 하나의 범죄군 내에서는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통일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처벌불원을 고려하는 데 대한 사회적인 비판을 고려할 때, 모든 대유형에 걸쳐 '처 벌불원'을 일반감경인자로 낮추고 특별감경인자로는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같은 다른 객관적인 사 정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서의 합의 관련 양형요소

① '처벌불원' ⇨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함에 의견 일치

- 현재 양형기준이 설정된 41개 범죄군에서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반영한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적 법익이나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 그 범죄의 특성에 따라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 또는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함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정책적 고려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처벌불원'을 형의 감경 요소로 아예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 지 않음
-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고, 피해 자인 아동·청소년의 특수성, 아동·청소년에 대한 두터운 보 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은 적절하지 않고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② 그 외 합의 관련 양형 요소 ➡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는 데 의견 일치

- 합의 관련 양형 요소 중 감경 요소로서의 위상이 가장 높은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는 이상 그 외의 합의 관련 양형요소, 즉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은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음이 타당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경우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는 특별감경인자를 통하여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음

4. 집행유예 기준

(1) 요약

- ※ 굵은 글씨와 밑줄로 표시된 부분은 의견 불일치
- ※ 이탤릭체(기운 글씨) 표시된 부분은 기존 양형위원회 심의 결과와 다른 의견이 제시된 부분

구분	부정적	긍정적
	O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O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	
	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으로 범행한 경우	O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T.0	○ <u>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u>	경우
주요 참작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O 피해자가 실존하지 않는 경우 <i>(4유형</i>
사유	또는	제외)
* 1111	○ <u>범행에 취약한 피해자</u>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O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	O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의 범행	O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O 동종 전과(성범죄, 성메메범죄 포	
	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구분	부정적	긍정적
	이상)	
	O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O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아기한 경우	
		O 동종 전과(성범죄, 성메메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
	O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	과가 없음
	과	O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O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O <u>자수</u>
일반	O 진지한 반성 없음	O 진지한 반성
참작	O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O <u>피고인이 고령</u>
사유	O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O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O 약물중독, 알콜중독	O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O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O 처벌불원
	O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O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O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
		한 곤경을 수반

(2) 상세

- 기본적으로 아래 2가지 쟁점 이외에는 양형인자에 대한 검토 결과와 동일함
- 대체로 ① 주요 참작사유에 대한 논의는 특별양형인자 중 해당 인자에 대한 논의와 ② 일반 참작사유에 대한 논의는 일반양형인자 중 해당 인자에 대한 논의와 같음

(가) 자수

- 다수 의견(10인)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반영
- '자수'는 다른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일반 긍정적 참 작사유로 반영되어 있음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5개 범죄에 대해서만 '자수'를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반영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 소수 의견(3인)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반영
- '자수'는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 판단에 있어서도 비중이 큰 요소임. 또 암수 범죄를 적발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적인 필요성도 존재함. 따라서 주요 참작사유로 반영함이 보다 합리적임
- '자수'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면서도 집행유예 참작사유 에서는 주요 참작사유가 아닌 일반 참작사유로 낮추어 반 영할 특별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음

(나) 피고인이 고령

- 제1 의견(7인)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에서 제외
- 고령이라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고, 2020년 7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6.1%에 달하여 이미 우리나라도 고령 사 회에 진입하였음
- 피고인이 고령인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진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음
- 제2 의견(6인)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반영
- 다른 대부분 범죄군의 양형기준에서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

V. 대유형 2.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형량범위, 양형인 자 및 집행유예 기준

1. 개관

가, 법률 규정 및 설정 범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페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적용	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 14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u>활</u> 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2	団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 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7년↓ 징역, 5천만 원↓벌금			

3	시·상영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제2항 범죄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3년↑ 징역
(5)	또는 시청 또는 시청 상습으로 제1항 내지 제3항	3년↓ 징역, 3천만 원↓벌금 각 형의 1/2 기중
(5)	│	각 형의 1/2 가중

나. 의결된 유형 분류 방식

○ 제103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소유 형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기로 의결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촬영			
2	반포 등			
3	영리 목적 반포 등			
4	소지 등			

2. 권고 형량범위

■ 양형위원회 심의 결과

○ 2019. 10. 25. 제97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기 전에 전문위원단이 마련한 권고 형량범위(안)에 대한 심의를 마침.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당시에는 법정형의 차이정도를 감안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에 규정된 영리 목적 반포 등 범죄를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소유형2(반포 등 범

죄)의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하였고, 소지 등 범죄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 신설되지 않았음. 이에 따라 소유형이 2개로 구분됨]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촬영	-8월	6월-1년6월	10월-2년6월
2	반포 등	4월-10월	8월-2년	1년-3년

■ 법률 개정 현황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법정형은 양형위원회의 종전 심의 이후 아래와 같이 변경됨

항	구분	제97차 양형위원회 당시	현재
1	촬영	5년↓ 징역, 3천만 원↓벌금	7년↓ 징역, 5천만 원↓벌금
2	반포 등	5년↓ 징역, 3천만 원↓벌금	7년↓ 징역, 5천만 원↓벌금
3	영리 목적 반포 등	7년↓ 징역	3년↑ 징역
4	소지 등	-	3년↓ 징역, 3천만 원↓벌금

가. 소유형 1(촬영)

(1) 법정형 동일 성매매범죄군 형량 범위

(가)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3항(7년 ↓, 5천만 원↓)

○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 상 성매매 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10월	8월-1년6월	1년-3년

(나)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2항(7년 ↓, 5천만 원 ↓)

○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 상 성매매 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10월	8월-1년6월	1년-3년

(2) 선고 형량

(가) 양형자료 조사결과 (2014. 1. 1.~2018. 12. 31. 선고 단일범)

전체	실형	집행유예	합계
인원	242	1,316	1,558
%	15.5	84.5	100

실형									- 7	형량(개월)									합계
28	2	3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22	24	30	36	42	54	답게
인원	1	2	29	8	77	1	48	1	31	25	2	1	1	5	1	4	2	1	1	1	242
%	0.4	0.8	12.0	3.3	31.8	0.4	19.8	0.4	12.8	10.3	0.8	0.4	0.4	2.1	0.4	1.7	0.8	0.4	0.4	0.4	100

집행유	형량(개월)										합계
예	2 4 5 6 8 9 10 12 14 18							1 1 1			
인원	2	258	11	603	217	1	125	92	1	6	1,316
%	0.2	19.6	0.8	45.8	16.5	0.1	9.5	7.0	0.1	0.5	100

(나) 분석

- 평균형량 = 7.08개월(실형 8.66개월, 집행유예 6.79개월)
- 실형 = 6개월 31.8% > 8개월 19.8% > 10개월 12.8%

○ 집행유예 = 6개월 45.8% > 4개월 19.6% > 8개월 16.5%
 ※ 다만,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므로(5년 이하 징역 → 7년 이하 징역), 양형자료 조사결과는 제한된 범위에서 참고 가능

(3) 논의 결과 ▷ 의견 일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촬영	4월 - 10월	8월 - 2년	1년 - 3년		

- 2019. 10. 25. 제97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당시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이었던 '반포 등 범죄'와 7년 이하 징역이었던 '영리 목적 반포 등 범죄'를 하나의 유형(소유형2)로 묶어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함
- 그런데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으로 소유형 1(촬영)의 법정형(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종전 소유형2와 유사 하게 되었으므로, 양형위원회가 종전에 심의한 소유형 2(반포 등)의 권고 형량범위를 원용할 수 있게 됨
- 법정형이 동일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보다 감경 영역 의 하한과 기본 영역의 상한을 상향함으로써 엄정한 처벌에 대 한 사회적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

나. 소유형 2(반포 등)

(1) 법정형 동일 성매매범죄군 형량 범위

(가)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3항(7년 ↓, 5천만 원 ↓)

○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 상 성매매 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10월	8월-1년6월	1년-3년

(나)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2항(7년 ↓, 5천만 원↓)

○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 상 성매매 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10월	8월-1년6월	1년-3년

(2) 선고 형량

(가) 양형자료 조사결과 (2014. 1. 1.~2018. 12. 31. 선고 단일범)

전체	실형	집행유예	합계	
인원 6		13	19	
%	31.6	68.4	100	

실형									7	형량(개월)									합계
	2	3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22	24	30	36	42	54	답게
인원	-	-	-	-	2	-	1	-	-	1	-	-	-	1	-	1	-	-	-	-	6
%	-	-	-	-	33.3	-	16.7	-	-	16.7	-	-	-	16.7	-	16.7	-	-	-	-	100

집행유									합계		
예	2	4	5	6	8	9	10	12	14	18	합세
인원	-	1	-	4	3	-	1	2	-	2	13
%	-	7.7	-	30.8	23.1	-	7.7	15.4	-	15.4	100

(나) 분석

- 평균 형량 = 10.32개월(실형 12.33개월, 집행유예 9.38개월)
- 5년간 총 19건, 연평균 3.8건 불과 → 표본 극소수
- ※ 다만,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므로(5년 이하 징역 → 7년 이하 징역), 양형자료 조사결과는 제한된 범위에서 참고 가능

(3) 논의 결과 □ 의견 일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반포 등	4월 - 1년4월	1년 - 2년6월	1년6월 - 4년	

○ 불법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는 단순 촬영행위보다 일반적으로 피해의 정도가 더 크게 되므로, 비록 양자의 법정형이 같지만 소유형2의 각 영역별 권고 형량범위를 소유형1보다 다소 상향 하는 것이 타당함

다. 소유형 3(영리 목적 반포 등)

(1) 법정형 동일 또는 유사 성범죄군 형량 범위

(가) 형법 제297조(3년↑)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간	1년6월-3년	2년6월-5년	4년-7년

(나)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 4항(3년 ↑ / 3-5천만 원)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의제간음/강제추행	1년6월-3년	2년6월-5년	4년-6년

(2) 선고 형량

○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어(7년 이하 징역 \rightarrow 3년 이상 징역), 양 형자료 조사결과는 의미가 없게 됨

(3) 논의 결과 및 형량 범위안

(가) 요약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다수 의견(7인)	1년6월 - 4년	2년6월 - 6년	4년 - 8년		
제1 소수 의견(4인)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제2 소수 의견(2인)	1년6월 - 3년6월	3년 - 5년	4년 - 7년		

(나) 논거

⑦ <u>다수 의견(7인)</u>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소유형 3(배포 등)과 법정형 이 동일하므로, 그 권고 형량범위와 동일하게 정하는 것이 타당함

④ 제1 소수 의견(4인)

-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범죄인 형법 제297조에 규정된 강간죄보다 소유형 3(배포 등) 범죄가 죄책이 더 무겁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강간죄 또는 장애인에 대한 강제

추행죄의 권고 형량범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권고 형량 범위를 설정함이 타당

④ 제2 소수 의견(2인)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소유형 3(배포 등)보다는 죄 책이 더 가벼우므로 각 영역의 상한을 일부 낮추되, 기본 영역 하하은 법정형 하하과 동일하게 3년으로 정함이 타당

라. 소유형 4(소지 등)

(1) 법정형 동일 또는 유사 범죄 형량 범위

(가) 성매매처벌법6) 제19조 제1항(3년 ↓. 3천만 원 ↓)

○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매매 알선	-6월	4월-10월	8월-1년6월

(나) 형법 제271조 제1항(3년 ↓, 5백만 원 ↓)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적 기준	-8월	2월-1년	6월-1년6월

(다) 형법 제283조 제1항(3년 ↓, 5백만 원 ↓)

○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6) &#}x27;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약칭. 이하 같음.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협박	-8월	2월-1년	4월-1년6월

(2) 선고 형량

○ 신설 범죄로 양형자료 조사결과가 존재하지 않음

(3) 논의 결과 및 형량 범위안

(가) 요약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제1 의견(6인)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제2 의견(4인)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제3 의견(3인)	- 10월	6월 - 1년6월	1년 - 2년

(나) 상세

⑦ <u>제1 의견(6인)</u>

-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 중 성매매 알선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을 감안하여 상한과 하한을 조금씩 상향 조정함이 타당

④ 제2 의견(4인)

- 법정형이 동일하고 죄책의 정도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성매매 알선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그대로 준용함 이 타당

④ 제3 의견(3인)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중 소유형5 '구입 등'의 권고 형 량범위를 참고하되, 법정형의 차이를 감안하여 다소 하향하 여 형량범위를 설정함이 타당

마. 상습 촬영·반포 등(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 ➡ 형량 범위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로 가중하는 서술식 기준(의견 일치)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중 상습범에 관한 권고 형량범위와 같은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에 따라 추가된 상습 촬영・ 반포 등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에 대해서는 형량범위 의 상한과 하한을 각각 1.5배 가중하는 서술식 기준을 두는 것 이 타당함

바. 요약(전문위원단의 일치된 의견이나 다수 의견 또는 제1 의견 에 의할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촬영	4월 - 10월	8월 - 2년	1년 - 3년
2	반포 등	4월 - 1년4월	1년 - 2년6월	1년6월 - 4년
3	영리 목적 반포 등	1년6월 - 4년	2년6월 - 6년	4년 - 8년
4	소지 등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4유 형 제외)7)

3. 양형인자

가. 양형위원회 심의 결과

○ 2019. 12. 9. 제98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카메라등이용촬 영범죄의 양형인자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7) &#}x27;(4유형 제외)'를 '(1, 2, 3 유형)'과 같이 표시하는 방안도 가능함.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가 있는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 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소극 가담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 우(2유형)	
	행위자 /기타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이상 전과(성범죄 포함,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양형인자의 정의]8)

(1)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촬영물의 대상, 내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던 경우 또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3)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의 인적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촬영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촬영물, 복제물을 ① 불특정 다수 또는 피해자의 가족, 같은 교육시설의 교사·학생, 직장동료 등 밀접한관계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②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거나, ③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9)
- 자살, 자살시도, 가정파탄, 학업 중단, 실직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10)

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서의 양형인자 정의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따로 적지 않음.

⁹⁾ 기존 양형위원회 심의 내용을 구성요건 변동에 맞추어 수정함

¹⁰⁾ 기존 양형위원회 심의 내용을 무거운 피해부터 나열함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햇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 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 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5)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 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나, ②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 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 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 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 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 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나. 검토 결과

- 전문위원단은 2019. 12. 9. 제98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양형인자에 대한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함
- 양형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양형인자 중 전문위원단 사이에서 새로운 검토 결과가 제시되지 않은 양형인자의 경우 양형위원 회의 심의 결과를 그대로 따름

(1) 요약

- ※ 굵은 글씨와 밑줄로 표시된 부분은 의견 불일치
- ※ 이탤릭체(기운 글씨) 표시된 부분은 기존 양형위원회 심의 결과와 다른 의견이 제시된 부분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삐 품피 층이 평이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자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 인 조치 	 동종 누범(성범죄, 성메메범죄 포함)
일	행위	 소극 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3 유형)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유 형)
반 양 형 인 자	행위자 /기타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정의 규정 유무에 의견 대립)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서의 논의 결과와 중복되는 쟁점

(가) 의견 일치

- 아래 양형인자를 포함하여, (3)항의 추가 쟁점을 제외한 나 머지 양형인자에 대한 논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서의 양형인자에 관한 논의 결과와 동일함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다만 양형인자 의 정의 중 일부 문구를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의 구성요건

에 맞추어 밑줄 부분과 같이 수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촬영물, 복제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 유포된 <u>촬영물, 복제물을</u>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동종 전과 범위에 성범죄뿐 아니라 성매매범죄도 포함
- '진지한 반성'을 일반감경인자로 반영

(나) 의견 불일치

- 일반감경인자로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3유형)'를 포함할 것인지 / 일반가중인자로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유 형)'를 포함할 것인지
- 일반감경인자인 '형사처벌 전력 없음'의 적용범위를 제한할 것인지 여부

(3) 추가 쟁점

- (가) 특별감경인자 : '실제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의 표현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
- 제1 의견(6인) : <u>'실제 피해 정도가 제한적인 경우'로 수정</u>
- 피해가 '경미'하다는 표현은 성인지 감수성 또는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양형인자의 표현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
- 특별가중인자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와

대칭이 되는 감경인자이고, 향후 양형실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의 규정에 추가할 만한 새로운 사례가 추출될 여지가 있으므로, 현재 정의 규정에 적혀 있는 하나의 예시만을 양형인자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정의 규정은 기존 양형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아래와 같이 유지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촬영물의 대상, 내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제2 의견(5인) : <u>'촬영물의 대상, 내용 등을 쉽게 파악할 수</u> 없는 경우'로 수정

- 제1 의견의 취지대로 피해가 '경미'하는 표현은 부적절함. 다만 피해 정도가 '제한적'이라는 표현 역시 실무상 아직 많이 사용되지 않아 어색한 측면이 있음
- 정의 규정에 있는 예시 내용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

○ 제3 의견(2인) : <u>'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로 유지</u>

- 피해가 적다는 점을 양형인자로 반영하는 대부분의 양형기 준에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 고,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서만 그 표현을 달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충분하지 않음

(나) **처벌불워**¹¹⁾

○ 다수 의견(10인) : 특별감경인자로 반영

- 양형기준이 설정된 41개 범죄군에서 개인적 법익, 즉 인격적, 재산적 법익에 관한 범죄에서는 예외 없이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였으므로, 이와 균형을 맞추어야 함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경우 사회적 법익의 침해가 문제될 뿐 아니라 피해자가 판단능력이 아직 성숙하지 않 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 를 양형에 반영하는 정도를 낮춘 것임. 그러나 개인적 법익 을 보호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과 마찬가지로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양형 에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소수 의견(3인) : 일반감경인자로 반영

- 하나의 범죄군 내에서는 '합의' 관련 양형요소의 위상을 통일적으로 정함이 타당
-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처벌불원을 고려하는 데 대한 사회적인 비판을 고려할 때, 일반감경인자로만 반영함 이 타당

(다) 상당 금액 공탁12)

○ 다수 의견(11인) : <u>일반감경인자로 반영</u>

-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한다면, 그보다 위상이 낮은 합의 관련 양형 요소인 '상당 금액 공탁'을 일반감경인 자로 반영함이 타당
- 인격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대부분의 양형기준에서 일반감경인자로 반영

¹¹⁾ 이 부분 논의 내용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대유형 3~5의 각 범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¹²⁾ 이 부분 논의 내용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대유형 3~5의 각 범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촉진한다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고려 할 필요가 있음

○ 소수 의견(2인) : 일반감경인자에서 제외

- '상당 금액 공탁'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한 양형 요소이므로 감경인자로 고려되지 않음이 타당
- '처벌불원'을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한다면, 이에 맞추어 그보다 위상이 낮은 '상당 금액 공탁'은 일반감경인자에서 제외함이 타당

4. 집행유예 기준

(1) 요약

- ※ 굵은 글씨와 밑줄로 표시된 부분은 의견 불일치
- ※ 이탤릭체(기운 글씨) 표시된 부분은 기존 양형위원회 심의 결과와 다른 의견이 제시된 부분

구분	부정적	긍정적
	O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O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	
	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O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T 0	으로 범행한 경우	경우
주요	O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O 실제 피해 정도가 제한적인 경우
참작 사유	O 동종 전과(성범죄 <i>, 성메메범죄</i> 포	O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111	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O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상)	O 처벌불원
	O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O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O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	O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참작	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
사유	O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과가 없음

구분	부정적	긍정적
		O 상당 금액 공탁
		O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O 진지한 반성 없음	○ <u>자수</u>
	O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O 진지한 반성
	○ <u>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유형)</u>	○ <u>꾀고인이 고령</u>
	O 약물중독, 알콜중독	O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3유형)
	O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O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O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O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O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
		한 곤경을 수반

(2) 상세

- 기본적으로 양형인자에 대한 검토 결과와 동일함
- 대체로 ① 주요 참작사유에 대한 논의는 특별양형인자 중 해당 인자에 대한 논의와, ② 일반 참작사유에 대한 논의는 일반양형인자 중 해당 인자에 대한 논의와 같음
- 집행유예 기준에서만 제기되는 아래 쟁점의 경우 아동·청소 년성착취물 범죄에서의 검토 결과와 동일함
 - ① **자수**: 다수 의견은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소수 의견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반영하자는 입장
 - ② 피고인이 고령 : 제1 의견은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에서 제외하고, 제2 의견은 현행과 같이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반영하자는 입장

VI. 대유형 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의 형량범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1. 개관

가. 법률 규정 및 설정 범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 (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 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적용	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1	반포등 목적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 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	
§14 조의2	2	① 제1항에 따른 편집물 등을 반포등 ② 제1항의 편집등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 또는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 하여 반포등	5년↓ 징역, 5천만 원↓벌금
	3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제2항 범죄	7년↓ 징역
	5	상습으로 제1항 내지 제3항	각 형의 1/2 가중

나, 의결된 유형 분류 방식

○ 제103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는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 의 소유형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기로 의결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편집 등			
2	반포 등			
3	영리 목적 반포 등			

2. 권고 형량범위

가. 소유형 1(편집 등) / 소유형 2(반포 등)

(1) 법정형 동일 성매매범죄 등 형량 범위

(가)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3항(5년 ↓, 3천만 원↓)

○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 상 성매매 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강요 ¹³⁾	-6.67월	5.33월-1년	8월-2년

(나) 형법 제261조 제1항(5년 ↓, 1천만 원 ↓)

○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¹³⁾ 제1유형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양형위원회, 양형기준(2020), 422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6	특수폭행	2월-1년2월	4월-1년10월	6월-2년4월

(다) 형법 제276조 제1항(5년 ↓, 7백만 원 ↓)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 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체포	-8월	6월-1년	8월-2년

(2) 논의 결과 ▷ 의견 일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편집 등	- 8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	반포 등	- 8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 2019. 10. 25. 제97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카메라등이용 촬영 범죄 중 소유형 1(촬영, 당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권고 형량범위를 감경 영역은 '8월 이하', 기본 영역은 '6월~1년 6월', 가중 영역은 '10월~2년 6월'로 정함
-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 죄 중 소유형 1(편집 등)과 소유형 2(반포 등)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카메라등이용 촬영 범죄 중 소유형 1의 권고 형량범위에 관한 양형위원회의 종전 심의 결과를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 허위영상물을 편집하거나 반포하는 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에 대한 직접 촬영물 등이 아니라는 점에 서, 법정형이 동일한 편집 등 범죄와 반포 등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를 반드시 달리할 필요는 없음

나. 소유형 3(영리 목적 반포 등)

(1) 법정형 동일 성매매범죄군 형량 범위

(가)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3항(7년 ↓, 5천만 원 ↓)

○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 상 성매매 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10월	8월-1년6월	1년-3년

(나)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2항(7년↓, 5천만 원↓)

○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 상 성매매 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10월	8월-1년6월	1년-3년

(2) 논의 결과 ⇨ 의견 일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영리 목적 반포 등	4월 - 1년4월	1년 - 2년6월	1년6월 - 4년	

-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소유형 2(반포 등)와 법정형이 동일하므로, 그와 동일하게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함이 타당
- 다. 상습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 항) ➡ 형량 범위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로 가중하는 서술식 기준(의견 일치)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중 상습범에 관한 권고 형량범위와 같은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상습 허위영 상물 편집·반포 등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대 해서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각 1.5배 가중하는 서술식 기준을 두는 것이 타당함

라. 요약(의견 일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편집 등	- 8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	반포 등	- 8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3	영리 목적 반포 등	4월 - 1년4월	1년 - 2년6월	1년6월 - 4년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양형인자

가. 기본 방향

○ 나항의 추가 쟁점 이외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서의 양형 인자 및 그 정의규정에 대한 검토 결과와 동일함

[양형인자표]

※ 굵은 글씨와 밑줄로 표시된 부분은 의견 불일치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백교 양 경이 :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 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자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u>처벌불원</u>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 적인 조치 	• 동종 누범(성범죄 <i>, 성메메범죄</i> 포함)
일반양	행위	 소극 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3 유형)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유 형)
형 인	행위자 /기타	• <u>상당 금액 공탁</u> •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 형사처벌 전력 없음(정의	이상 전과(성범죄, 성메메범죄
	규정 유무에 의견 대립)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
자		만)
^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
		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
		하는 경우는 제외)

나. 추가 쟁점

- (1) 의견이 일치된 부분
- (가) '실제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또는 '실제 피해 정도가 제한적인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경우 정의 규정 수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u>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u>의 대상, 내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경우 정의 규정 수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u>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u>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 유포된 <u>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u>을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자 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 경우 정의 규정 수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의 인적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편집, 합성, 가공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을 ① 불특정 다수 또는 피해자의 가족, 같은 교육시설의 교사·학생, 직장동료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②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 자살, 자살시도, 가정파탄, 학업 중단, 실직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 경우 그 정의 규정에 "편집, 합성, 가공한 것임을 식별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를 포함할지에 대하여 의견이 나뉨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 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

제물을 광범위하게 유포한 경우

- 편집, 합성, 가공한 것임을 식별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수 의견(9인) : 포함함이 타당

- 편집, 합성, 가공이 정교하게 이루어져 편집 등 사실을 식별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편집, 합성, 가공의 정도가 조잡한 경우와 양형상 차등을 둘 필요가 있음

○ 소수 의견(4인) : 제외함이 타당

- 편집, 합성, 가공한 것임을 식별하기 어려운지 쉬운지는 법 익 침해 정도와 크게 관련되지 않음
- 기본적으로 편집, 합성, 가공한 것임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전제 아래 처벌 규정을 두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편집, 합 성, 가공한 것임을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는 기본 영역에 해 당하도록 양형기준을 설정하여야 함

(3)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정의 규정 관련

- 제98차 양형위원회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보다 엄정한 양형을 위해 특별가중인자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정의 규정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 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는 문구를 추가 하기로 의결함
-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의 경우 일률적으로 아동·청소년 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보아 다른 범죄군에서의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정의 규정을 유지하기로 의결함

○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허위영상물등반포 등 범죄의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와 동일하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개념을 확대할 것인지 의결 필요

4. 집행유예 기준

- 기본적으로 양형인자에 대한 검토 결과와 동일함
- 대체로 ① 주요 참작사유에 대한 논의는 특별양형인자 중 해당 인자에 대한 논의와, ② 일반 참작사유에 대한 논의는 일반 양형인자에 대한 논의 중 해당 인자에 대한 논의와 같음
- 일부 정의 규정을 수정하는 이외에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집행유예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음
- 집행유예 기준에서만 제기되는 아래 쟁점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서의 검토 결과와 동일함
 - ① **자수**: 다수 의견은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소수 의견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반영하자는 입장
 - ② 피고인이 고령 : 제1 의견은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에서 제외하고, 제2 의견은 현행과 같이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반영하자는 입장

VII. 대유형 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의 형 량범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1. 개관

가. 법률 규정 및 설정 범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정역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1	촬영물 또는 복제물로 사람을 협박	1년↑ 징역
§ 14 조의3	2	협박으로 권리행사 방해강요	3년↑ 징역
	3	상습으로 제1항, 제2항	각 형의 1/2 가중

나, 의결된 유형 분류 방식

○ 제103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 요 범죄의 소유형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기로 의결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협박			
2	강요			

2. 권고 형량범위

가. 소유형 1(협박)

(1) 법정형 동일 협박범죄 형량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1년↑)

○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5	보복목적 협박	4월-1년4월	10월-2년	1년-2년6월

(나)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6항(1년 ↑, 1천만 원~3천만 원)

○ 성범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장애인 위계・위력추행	9월-1년6월	1년3월-2년6월	2년-3년

(2) 논의 결과 및 형량 범위안

(가) 요약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다수 의견(10인)	4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 - 2년6월
소수 의견(3인)	9월 - 1년6월	1년 - 3년	2년 - 4년

(나) 논거

⑦ <u>다수 의견(10인)</u>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범죄는 기본적으로 협박 범죄에 해당하고, 범행 수단이 촬영물 등이어서 그 죄책이 더 무겁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중 처벌하는 것임. 따라서 법정형이

유사한 범죄 중 보복 목적 협박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 위를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④ 소수 의견(3인)

- 보복 목적 협박 범죄보다 죄질이 더 나쁘므로, 보복 목적 협박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보다 더 높게 권고 형량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 성적 욕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성범죄적 요소도 있으므로, 장애인 위계·위력 추행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참고하면서 그보다 더 높게 정하는 것이 타당함

나, 소유형 2(강요)

(1) 법정형 동일 범죄 형량 범위

(가)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3호(3년↑)

○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누범 특수상해	1년6월-3년	2년-4년	3년-6년

(나)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3호(3년↑)

○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 · 특수공갈 · 누범공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누범 특수공갈	1년6월-3년	2년-5년	4년-7년

(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3년 ↑, 1천만 원~3천만 원)

○ 성범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강제추행	1년6월-3년	2년6월-5년	4년-6년

(2) 논의 결과 및 형량 범위안

(가) 요약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다수 의견(10인)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소수 의견(3인)	1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나) 논거

⑦ 다수 의견(10인)

- 기본적으로 강요 범죄에 해당하고, 범행 수단이 촬영물 등이어서 그 죄책이 더 무겁다는 점에서 가중 처벌하는 것임. 따라서 법정형이 유사한 범죄 중 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누범 특수상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준용하는 것이보다 합리적임

④ 소수 의견(3인)

-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정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 물 범죄 중 법정형이 같은 소유형 3(배포 등), 소유형4(아 동·청소년 알선)의 권고 형량범위에 대한 제2 소수 의견과 동일하게 권고 형량범위를 정함이 타당

- 다. 상습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3 항) ⇨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로 가중하는 서술식 기준(의견 일치)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중 상습범에 관한 권고 형량범위와 같은 이유로 상습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성폭력처벌법 제 14조의3 제3항)에 대해서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각 1.5 배 가중하는 서술식 기준을 두는 것이 타당함

라. 요약(다수 의견에 의할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협박	4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 - 2년6월
2	강요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양형인자

(1) 요약

※ 굵은 글씨와 밑줄로 표시된 부분은 의견 불일치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미필적 고의로 협박·강요행위를 저지른 경우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협박·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

			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u>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u> 인 조치 <u>처벌불원</u>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일	행위	• 소극 가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반 양 형 인 자	행위자 /기타	상당 금액 공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정의 규정 유무에 의견 대립)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2) 의견이 일치된 양형인자14)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 일반 가중인자에 포함(의견 일치)
- 협박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반영되어 있는 양형인자로서 기본적으로 협박, 강요범죄인 대유형 4의 범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양형인자임

¹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허위영상물 등반포등 범죄에서의 양형인자 논 의와 중복되는 부분은 따로 적지 않음.

(3)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양형인자15)

(가) 특별감경인자

- ① 미필적 고의로 협박, 강요 행위를 저지른 경우
- ⑦ 다수 의견(10인):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
-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강요의 범행을 저지른다는 범 죄의 특성상 미필적 고의 범행을 상정하기 어려움
- ④ 소수 의견(3인): 특별감경인자로 반영
- 협박범죄, 강요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양형인자로 반영하였으므로, 기본적으로 협박, 강요범죄의 성격을 가지는 대유형 4 범죄의 양형인자로도 반영함이 타당
- ②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⑦ 다수 의견(9인) : 특별감경인자로 반영
- 범행수법 자체는 불량하지만 이를 이용한 협박·강요의 정 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특별 감경인자로 반영합이 타당
- 나 소수 의견(4인) :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
-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강요의 범행을 저지른다는 범죄의 특성상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상정하기어렵고, 가중 처벌의 취지에도 맞지 않음
- ③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⑦ 다수 의견(11인) :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
- 15)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허위영상물 등반포등범죄에서의 양형인자 논의 와 중복되는 부분은 따로 적지 않음.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등과는 달리 피고인이 협박·강 요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그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 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상정하기 어려우므 로 적합한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음

⊕ 소수 의견(2인) : 특별감경인자로 반영

-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의 중요성을 반영하여야 함
-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경우의 정의 규정은 아래와 같음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협박·강요에 동원된 촬영물, 복제물을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특별가중인자

- ① 협박・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 ⑦ 다수 의견(7인) : 특별가중인자에서 제외
-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강요의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해의 정도는 중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미 형이 가중되었으므로 다시 협박·강요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아 형을 가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④ 소수 의견(6인)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범행수법과 무관하게 협박·강요의 정도 자체가 중한 경우 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이 타당
- ②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⑦ 다수 의견(11인) : 특별가중인자에서 제외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을 구성요건에 반영하여 일반적 인 협박, 강요 범행보다 가중 처벌하는 것이므로, '범행수법

- 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 경우 양형 인자의 이중평가 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음
- 다른 대유형에서 정의하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는 대유형4의 범죄에는 적합하지 않음

④ 소수 의견(2인)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다른 대유형에서 정의하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는 고도의 지능적 수법을 이용한 경우 등을 의미하므로, 특별 가중인자로 반영하더라도 양형인자의 이중평가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음

(4)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정의 규정 관련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의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 촬영 범죄와 동일하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개념을 확대 할 것인지 의결 필요

4. 집행유예 기준

(1) 요약

※ 굵은 글씨와 밑줄로 표시된 부분은 의견 불일치

구분	부정적	긍정적
	O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O <u>협박・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u>	O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주요	O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지를 대상으	경우
참작	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O <u>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u>
사유	으로 범행한 경우	O <u>미필적 고의로 협박·강요행위를 저</u>
	O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지른 경우
	O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	O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구분	부정적	긍정적
	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u>처벌불원</u>
	O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u>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u>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
	O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 과	과가 없음 〇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반	O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O <u>자수</u>
글린 참작	O 진지한 반성 없음	O 진지한 반성
사유	O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O <u>피고인이 고령</u>
	O 약물중독, 알콜중독	O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u>상당 금액 공탁</u>○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O 피고인의 구금이 부앙가족에게 과도 한 곤경을 수반

(2) 상세

- 기본적으로 양형인자에 대한 검토 결과와 동일함
- 대체로 ① 주요 참작사유에 대한 논의는 특별양형인자 중 해당 인자에 대한 논의와, ② 일반 참작사유에 대한 논의는 일반양형인자 중 해당 인자에 대한 논의와 같음
- 집행유예 기준에서만 제기되는 아래 쟁점의 경우 아동·청소 년성착취물 범죄에서의 검토 결과와 동일함
 - ① **자수**: 다수 의견은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소수 의견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반영하자는 입장
 - ② 피고인이 고령 : 제1 의견은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에서 제외하고, 제2 의견은 현행과 같이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반영하자는 입장

VIII. 대유형 5.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의 형량범위, 양형 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1. 개관

가. 법률 규정 및 설정 범위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 13	성적 욕망 유발· 만족 목적 통신매체 이용 성적 수치심 유발하는 말 등을 도달	1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

나. 의결된 유형 분류 방식

○ 제103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 요 범죄의 소유형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기로 의결함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통신매체이용음란			

2. 권고 형량범위

■ 양형위원회 심의 결과

○ 2019. 10. 25. 제97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의 개정 전에 전문위원단이 마련한 권고 형량범위(안)에 관하여 심의를 마쳤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통신매체이용음란	-6월	4월-10월	8월-1년6월	

■ 법률 개정 현황

○ 제97차 양형위원회 이후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법정형에 변동 이 생겼으나 징역형은 2년 이하로 동일하고 벌금형만 500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상향됨

가. 법정형 유사 성매매범죄 등 형량 범위

(가)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3년 ↓, 3천만 원 ↓)

○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매매 알선 등	-6월	4월-10월	8월-1년6월

(나) 형법 제260조 제1항(2년 ↓, 5백만 원 ↓)

○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8월	2월-10월	4월-1년6월

나. 선고 형량

(가) 양형자료 조사결과 (2014. 1. 1.~2018. 12. 31. 선고 단

일범)

전체	실형	집행유예	합계
인원	43	153	196
%	21.9	78.1	100

실형	형량(개월)						합계				
28	1	2	3	4	5	6	8	10	12	18	답계
인원	1	3	1	7	2	16	3	5	4	1	43
%	2.3	7.0	2.3	16.3	4.7	37.2	7.0	11.6	9.3	2.3	100

집행유	형량(개월)						합계				
예	1	2	3	4	5	6	8	10	12	18	답게
인원	-	2	1	42	5	81	13	6	3	-	153
%	-	1.3	0.7	27.5	3.3	52.9	8.5	3.9	2.0	-	100.0

(나) 분석

- 평균 형량 = 5.97개월(실형 6.60개월, 집행유예 5.79개월)
- 실형 = 6개월 37.2% > 4개월 16.3% > 10개월 11.6%
- 집행유예 = 6개월 52.9% > 4개월 27.5% > 8개월 8.5%

(2) 논의 결과 ⇨ 의견 일치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통신매체이용음란	-6월	4월-10월	8월-1년6월	

○ 2019. 10. 25. 제97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고 형량범위를 심의할 당시와 비교하여 법정형 중 징역형 부분이 달라지지 않 았으므로, 종전 양형위원회 심의 결과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3. 양형인자

가. 양형위원회 심의 결과

○ 2019. 12. 9. 제98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의 양형인자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양형인자표]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향 형 인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자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01	행위	• 소극 가담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자 /기타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 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양형인자의 정의]16)

(1)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도달한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성적 수치심이 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음란성)가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자살, 자살시도, 가정파탄, 학업 중단, 실직 등 피해자에게 회 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¹⁷)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나. 검토 결과

○ 전문위원단은 2019. 12. 9. 제98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양형인자에 관한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함 - 양형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양형인자 중 전문위원단 사이에서 새로운 검토 결과가 제시되지 않은 양형인자의 경우 양형위원 회의 심의 결과를 그대로 따름

(1) 요약

- ※ 굵은 글씨와 밑줄로 표시된 부분은 의견 불일치
- ※ 이탤릭체(기운 글씨) 표시된 부분은 기존 양형위원회 심의 결과와 다른 의견이 제시된 부분

구분			가중요소
구군		무성표조	시오표조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설제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동종 누범(성범죄, 성메매범죄 포함)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 소극 가담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행위자 /기타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정의 규정 유무에 의견 대립)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이상 전과(성범죄, 성메메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¹⁶⁾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양형인자 정의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따로 적지 않음.

¹⁷⁾ 기존 양형위원회 심의 내용을 무거운 피해부터 나열함

(2) 상세

- 기본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또는 카메라등이용촬 영 범죄의 양형인자에 관한 검토 결과와 동일함
- 다만 양형위원회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의 일반가중인 자로 '공범으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반영하기로 의결하였음. 그러나 다른 대유형에서는 이를 양형인자로 반영하지 않았고, 특별히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에 한하여 '공범으로서의 주도 적 역할'을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할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외함이 타당

4. 집행유예 기준

(1) 요약

- ※ 굵은 글씨와 밑줄로 표시된 부분은 의견 불일치
- ※ 이탤릭체(기운 글씨) 표시된 부분은 기존 양형위원회 심의 결과와 다른 의견이 제시된 부분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이 동종 전과(성범죄, 성메메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이상)	 ○ 범행기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 정도가 정미한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 동종 전과(성범죄, 성메메범죄 포함)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구분	부정적	긍정적
	O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O 약물중독, 알콜중독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i>자수</i> ○ 진지한 반성 ○ <i>피고인이 고령</i>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기족에게 과도 한 곤경을 수반

(2) 상세

- 기본적으로 양형인자에 대한 검토 결과와 동일함
- 대체로 ① 주요 참작사유에 대한 논의는 특별양형인자 중 해당 인자에 대한 논의와, ② 일반 참작사유에 대한 논의는 일반양형인자 중 해당 인자에 대한 논의와 같음
- 집행유예 기준에서만 제기되는 아래 쟁점의 경우 아동·청소 년성착취물 범죄에서의 검토 결과와 동일함
 - ① **자수**: 다수 의견은 일반 궁정적 참작사유로, 소수 의견은 주요 궁정적 참작사유로 반영하자는 입장
 - ② 피고인이 고령 : 제1 의견은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에서 제외하고, 제2 의견은 현행과 같이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반영하자는 입장

5. 집행유예 참작사유표의 제시 방안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제시하는 방안은 ① 하나의 범죄군에 대하여 하나의 표를 제시하는 방안과 ② 하나의 범죄군에 속하는 대유형 별로 또는 유사한 대유형별로 각각 별도의 표를 제시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성범죄 양형기준의 경우 대유형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집행유예 참작사유표를 제시함(2020 양형기준 책자 55쪽)
- 반면 뇌물범죄 양형기준의 경우 대유형1(뇌물수수)과 대유형2(뇌물공여)를 구분하여 각각 별개의 집행유예 참작사유표를 제시함 (2020 양형기준 책자 25쪽)
- 현재 대유형별 집행유예 참작사유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어느 방안이 양형기준을 적용하거나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바람직한지 단정하기 어려움. 이 부분은 양형위원회에서 대유형별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의결한 후 전문위원단에서 추가 검토를 진행하여 보고 예정
- 다만 관계기관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유예 참작 사유표의 제시 방안을 포함한 양형기준안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양형위원회 일정상 집행유예 참작사유표의 제시 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별도의 양형위원회 개최는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집행유예 참작사유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제시하는 방식이 문제되는 데 불과하므로, 일단 잠정적으로 하나의 방안을 의결한 후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공청회를 진행하고, 그 후 전문위원단의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최종 방안을 확정하여 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IX. 향후 일정

○ 일시 : 2020. 10. 12.(월) 15:3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① 주거침입범죄의 양형기준 심의(설정 범위, 유형 분류)

② 환경범죄의 양형기준 심의(설정 범위, 유형 분류)